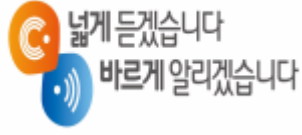


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, Infrastructure and Transport		보도자료		
		배포 일시	2014. 7. 17(목) 총 5매(본문 4, 붙임 1)	
담당 부서	지역정책과	담당 자	과장 박정수, 사무관 김계흥, 주무관 김광주 ☎ (044)201-3662, 3665, 3666	
보도 일시		2014년 7월 18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7. 17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지역발전 이끌 투자선도지구 지정 기준 마련된다

- 「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안·시행규칙안 입법예고 -

- ☐ **지역의 전략사업을 집중 지원**하기 위해 신설되는 ‘투자선도지구’의 **지정 기준** 등이 마련되고, 지역주도로 신속히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**지자체에 심의·지원기구**가 설치된다.
- ☐ 국토교통부(장관 서승환)는 지난 3월 ‘**지역경제 활성화 대책**’에서 발표된 **지역개발제도 통합**, 투자선도지구 도입을 위한 후속조치로서
 - 지난 6월 3일 제정·공포되어,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「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이하 “지역개발지원법”이라 함)」의 **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을 7월 18일(금) 입법예고**한다고 밝혔다.
- ☐ ‘**지역개발지원법**은 기존의 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과 「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」에 의해 시행되던 **5개의 유사·중복된 지역개발제도를 통합**하고,
 - **지역 전략사업 집중 지원**을 위해 **투자선도지구를 신설**하며, 지역주도의 지역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**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**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.
- ☐ 지역개발지원법 시행령·시행규칙안의 **주요 내용**은 다음과 같다.
 - ① **투자선도지구 지정기준 및 건축규제 완화**

○ **지자체에서** 발굴한 선도적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**지역 전략사업**에 규제특례, 인센티브 등을 집중 지원할 수 있는 **투자선도지구**의 구체적인 지정 기준을 마련한다.

- 지정 기준* 중 ‘투자 또는 고용창출 예상규모’의 구체적인 범위를 **1,000억 원 투자 또는 300명 이상 고용**으로 하고, **낙후지역**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**500억 원 투자 또는 100명 이상 고용**으로 완화하였다.

* 지정기준: 기반시설 확보(가능성), 성장잠재력, 투자 또는 고용창출 예상규모, 파급효과 또는 민간투자 가능성

○ 또한, 투자선도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중 **용적률, 건폐율**의 완화 범위를 **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최대한도**까지로 하였다.

○ 투자선도 지구는 지난 3월 ‘지역경제 활성화 대책’에서 발표된 것으로, 국토교통부는 연내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**’15년 상반기 중 공모절차**를 거쳐 **하반기에 시범사업 대상지 3곳**을 선정할 계획이다.

② 지역주도의 지역개발사업 추진체계 마련

○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권한이 종전 국토부장관에서 **시·도지사**로 **이양됨**에 따라 시·도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등 **지역개발사업 관련 심의**를 위한 **지역개발조정위원회**가 설치된다.

- 위원회의 **위원장은 시·도지사**로 하고, **위원**은 지방국토·환경·산림청장 등 **관계 특별행정기관의 장**과 국토계획·도시·관광·물류·금융·환경 등 관련 **전문가** 등의 20인 이내로 구성된다.

○ 이와 함께,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유치와 시행자 및 입주기업의 인·허가, 민원 등 지역개발사업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**시·도에**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**종합지원센터**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.

③ 다양한 지역개발 수요에 동 제도 활용

○ **다양한 지역개발 수요**에 동 법률을 **활용**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률에서 정한 낙후형·거점형 지역개발사업 외에 **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시행령에서 추가**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다.

- 이번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**고속철도**와 주변지역 개발, **군사시설** 주변지역 개발 유형을 규정하였고, 향후 **새로운 지역개발 수요**에 동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유형을 추가할 계획이다.

○ 또한, 역세권개발구역, 물류단지, 관광지 등 **타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**이 부진한 경우 동 법률의 **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전환**하여 규제특례, 인센티브 등을 활용해 사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○ 이를 통해, 지역개발지원법이 다양한 개발수요에 활용할 수 있는 **일반적인 개발제도**로 자리매김하게 되면, **무분별하게 지역개발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억제**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④ 사업시행자 및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 등 규제 개선

- 경직된 개발절차 운영에 따른 **지자체 등의 규제개선 건의**에 따라 지역개발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자체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 범위 및 사업시행자 범위를 확대하였다.
- 지역개발계획, 사업계획 등의 잦은 변경에 따른 **지자체·시행자의 부담을 경감**할 수 있도록 관련 심의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확대하였다.
- 또한, 사업시행자의 경우 종전 「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」에서 민간기업으로 한정하였던 것을 **개인, 법인, 협동조합**까지 확대하고, 시행능력이 있는 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자본금, 토지 소유권 확보 등 **자격요건을 규정**하였다.

□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, 법제처 심사 등 **입법 후속절차**를 거쳐 10월말 경 **공포**될 예정이며, '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.

□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**8월 24일까지 우편,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**(<http://www.molit.go.kr>) 법령정보 / 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* 의견제출처: 339-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
(전화: 044-201-3665, 3666, 팩스 044-201-5564)

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박정수 과장, 김계홍 사무관(☎ 044-201-3662, 366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-	--

- (투자선도지구)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선도적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대규모 **전략사업 추진지역**에 규제특례, 인센티브 등 **종합지원**
- (지정요건) ① 기반시설 확보(가능성) ② 성장잠재력 ③ 투자 또는 고용창출 **예상규모*** ④ 파급효과 또는 민간투자 가능성

< 투자선도지구 유형별 지정요건 >

유형	일반지역	낙후지역
투자·고용	1,000억 투자 또는 300인 고용	500억 투자 또는 100인 고용
규모	10만㎡ 이상	3만㎡ 이상

- (지정계획) '15년에 기존 사업을 대상으로 **3개소**를 시범지정하고, '17년까지 **총 14개** 지정 추진
- (절차) 지자체 공모방식으로 **수요조사('15.상)**를 거쳐 **대상지를 선정('15.하)**하고, 대상지에 대해 **사업성 검토** 등을 거쳐 **지구 지정 절차** 추진
- (지원) ① **규제특례**, ② **조세·부담금 감면**, ③ **용지매입비** 용자 등 자금지원(시·도), ④ **기반시설 지원**(정부), ⑤ **인허가 원스톱 지원**

구분	지역개발사업구역	투자선도지구
규제 특례	·인허가의제(62개 법률) ·특례(5종) - 학교·교육과정 특례 - 의료시설 특례 - 광역교통개선대책(광역교통관리특별법) - 체육시설 특례(체육시설법) - 원형지 공급	① 추가 인허가의제(3개 법률) - 임대전용산단 지정 - 관광특구 지정·고시 -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·고시 ② 추가 특례(3종) - 건폐율·용적율 완화 - 특별건축구역 지정 - 주택 우선 공급 특례
자금 지원	·지역개발사업자금 지원 ·편의시설 설치자금지원	·추가 자금지원 -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 -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·보조
조세·부담금	조세 및 7종의 부담금 감면 (협의 중)	
인프라 지원	기반시설 설치비 지원	
행정 지원	인허가, 투자 등 원스톱 서비스, 3단계 인허가 일괄처리	